

한국체육대학교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규정

제정 1991. 1. 22. (규칙 제111호)

변경 1995. 6. 14. (규칙 제147호)

변경 2005. 8. 10. (규칙 제45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 4 규정에 의거 정년까지 임용할 전임교수를 심사하기 위한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교무과장, 대학원장, 사회체육대학원장, 학생과장, 훈련과장과 5인 이내의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무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1인을 선출한다.

③ 위원은 총장이 임명하며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기능) ① 위원회는 정년까지 임용할 전임교수에 대하여 그 임용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

1. 연구실적 및 학술활동

2. 학생의 교수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등 기타 필요한 사항 등

② 전항 제2호는 전임교원업적평가점수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의2 (심사자료) 정년보장교원임용 심사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평정표 (별지 1호 서식)

2. 임용기간내의 논문 등 연구실적물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6조(관계자의 회의출석 및 자료제출)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의 회의출석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②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제 8 조(간사) <삭제>

제9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1991. 1.22. 제11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6.14. 제147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8. 10. 제455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평정표

피평정자	소 속 : 한국체육대학교 직 급 : 성 명 :	평정자	한국체육대학교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 위 원 장 : (인)				
구분 평정영역	평 가 항 목	실 적 및 의 건	평 정				
			A	B	C	D	E
1.교수로서의 기본적 자질	(1)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위						
	(2)인간관계						
	(3)건강상태						
2.학문연구 능력과 실적	(1)연구능력						
	(2)연구실적						
	(3)학문연구에 대한 발전성						
	(4)국내외 학술활동(학회등)						
	(5)외국어(학) 능력						
3.교수(강의) 능력과 실적	(1)교수능력						
	(2)수업진행상태						
	(3)수업효과(학생반응등)						
	(4)학습자료 활용도						
4. 학 생 지 도 능력과 실적	(1)분담(개별 및 집단)지도실적						
	(2)학생지도에 대한 자세						
	(3)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과 실적						
	(4)학내외 행사참여 및 지도실적						
5.국가사회에 대한 기여도	(1)국가사회발전에 학문적인 참여실적						
	(2)국가사회구성원으로서의 사회적책임감						
	(3)지역사회발전을 위한 기여도						
	(4)건전한 국가관의 확립						
	(5)본교발전을 위한 노력						
6.근무상황	(1)출근상황						
	(2)근무자세						
	(3)타대학 출강상황						
	(4)본직이외의 업무의 종사관계						
	(5)상벌관계						
7.기타사항	(1)학내, 학과내의 인화관계						
	(2)불평,불만 습성적 소유여부						
	(3)개인생활의 청렴도						
	(4)준법정신						
합 계							
적 격 여 부		적 격					부적격